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. 3. 10 선고 2019가단390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수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원준

변론 종결 2020. 2. 11

판결 선고 2020. 3. 10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8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

원고의 아버지는 1957년경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경남 하동군 C 임야 2,579㎡ 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200평(661㎡)을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, 이후 원고는 위 토지를 상속받았다.

피고는 2017. 8. 20.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토지를 8억 7천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매매계약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매수하였다거나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지희